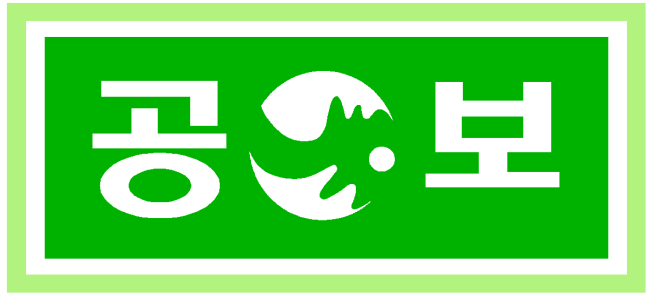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관	기 관 의 장



제 867 호 2014. 1. 20(월)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3호[하천점용(변경) 허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4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6호[도로명주소 고시]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7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8호[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8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53호[도로명주소 공시송달 공고] 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62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67호[「2014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16

회 관									
--------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4 행정712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13호

하천점용(변경) 허가 고시

하천법제 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변경)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왕 ○ ○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점용위치	중산동 1178		하 천 명	약수천			
점용목적	대지점용		점용면적 (㎡)	구 분	일시	영구	
				지방하천	-	당초 73 변경 24	
점용기간	○ 일 시		-				
	○ 영 구		2014. 1. 1. ~ 2018. 12. 31.				
토지 소재지	소재지		지 번	지북	편입면적(㎡)		소유자
	구,군	동,리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북구	중산동			1178번지	천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4 - 14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허가기간	점용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2014. 1.14.	2014 - 3	울산광역시 복구 제전2길 9	윤성천	복구 제전2길 9 일원 지선	45.0	2014.1.1. ~ 2014.12.31.	전복임시보관소	조건부 허 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 16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1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농서로 376-6외 1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 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01. 2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구분	응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담천동 480	울산광역시 북구 농서로 376-5(담천동)	2014-01-20	옛지명인 농서읍이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4-09	
2	울산광역시 북구 신평동 158-1, 159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795-27(신평동)	2014-01-20	이 지역이 지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8-20	
3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면촌지구 278 1L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6길 18(진정동)	2014-01-20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4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면촌지구 708 2-1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길 30(진정동)	2014-01-20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5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면촌지구 478 7L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9길 14-13(진정동)	2014-01-20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6	울산광역시 북구 신장면촌지구 1218 1-1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0길 52(명촌동)	2014-01-20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7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면촌지구 1218 1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0길 52-1(명촌동)	2014-01-20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8	울산광역시 북구 장평동 1153	울산광역시 북구 산검로 1238(장평동)	2014-01-20	울산의 산업을 형성시키자는 취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6-18	
9	울산광역시 북구 화방동 1460-2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14길 5-4(화방동)	2014-01-20	화동은 화방도 옛지명이며 산세가 경이름이 산자리에 따라 지리명(마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10	울산광역시 북구 화수지구 128 2L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5길 16-1(화개동)	2014-01-20	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3-12-30	
11	울산광역시 북구 담천동 402-10	울산광역시 북구 담천도림길 13-1(담천동)	2014-01-20	폭이 넓고 넉넉한 길이라는 뜻으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1-08-16	
12	울산광역시 북구 호문동 500-8	울산광역시 북구 송도길 26-2(호문동)	2014-01-20	호문동은 마을에 생김새가 송도로 인하여 옛 지리명(마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13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면촌지구 408 1L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16길 3(진정동)	2014-01-20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14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면촌지구 868 7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9길 3(진정동)	2014-01-20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15	울산광역시 북구 담천동 37-1, 신24-4	울산광역시 북구 농서1길 19(담천동)	2014-01-20	매곡동의 지명출판명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1-03-22	지번조정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4 - 1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1월 2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연암2길 26외 3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01. 2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2길 26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04-4	2014-01-20	건축물대장 말소	
2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0길 37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22B 7L	2014-01-20	건축물대장 말소	
3	울산광역시 북구 새장터8길 21-8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 305-3,305-10	2014-01-20	건축물대장 말소	
4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647-1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 201, 202	2014-01-20	건물번호 합병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4 - 18호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실시계획 승인사항

승 인 년월일	승인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사업기간	공사내용	비고
		주 소	성 명					
2014. 1. 17.	2014 -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774 3층	(주)BDC 대표자 송운용	북구 화암길 58 일원 지선	330㎡	2014.1. ~2014.2.	풍황계측시설 설치	조건부 허 가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4 - 53호

도로명주소 공시송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하고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0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 2014. 1. 20. ~ 2. 4(15일간)
- 변경하는 도로명주소

고지대상자	생년월일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별도열람”				

※ 도로명주소는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7586) 및 도로명주소검색 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 2014. 2. 10.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제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052-241-7585,75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대상자	생년월일	종전주소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변경시유
1	최 흥 식	1977.04.02	효문동 500-1	효전1길 31	효전1길 29	2004.01.05	부여 오류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6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14년 총액인건비 최종산정결과 조직관리기준 범위내 인력을 증원하여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하고, 공무원 직종개편후 현원기준 직급 불부합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2)

- 일반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 이내	20% 이내	29.7% 이내	30.3% 이내	13% 이상	1% 이내	6.3% 이내	19.4% 이내	30% 이내	31.5% 이내	11.8% 이상

나.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3)

- 총 계 : 521명 ⇒ 534명(증 13명)
- 일반직 계 : 519명 ⇒ 532명(증 13명)
 - 6급 이하 계 : 484명 ⇒ 496명(증 12명)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1.29.(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 전화: 052-241-7102, 팩스: 052-241-7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획홍보실에 비치하여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21명”을 “534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중 “508명”을 “521명”으로 한다.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제2항 관련)****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이내	6.3%이내	19.4%이내	30%이내	31.5%이내	11.8%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	100%	-	-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 급 별	총 계	분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34		-		
정 무 직 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532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1	18	2	3	8
6급 이하 계	496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 · 구 조 문 및 별 표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u>521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508명</u></p> <p>2. (생략)</p> <p>[별 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4급 이상</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th> <th>9급</th> </tr> <tr> <td>비율</td> <td>1% 이내</td> <td>6% 이내</td> <td>20% 이내</td> <td>29.7% 이내</td> <td>30.3% 이내</td> <td>13% 이상</td> </tr> </table> <p>비고(생략)</p> <p>2. (생략)</p> <p>[별 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회 사무과</th> <th>직 기</th> <th>순 관</th> <th>동</th> </tr> <tr> <td>총 계</td> <td><u>521</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청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519</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4</td> <td>3</td> <td></td> <td></td> <td>1</td> <td></td> </tr> <tr> <td>5급</td> <td><u>30</u></td> <td>18</td> <td>2</td> <td>2</td> <td>8</td> <td></td> </tr> <tr> <td>6급이하 계</td> <td><u>484</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급상당 이하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 이내	20% 이내	29.7% 이내	30.3% 이내	13% 이상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 기	순 관	동	총 계	<u>521</u>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u>519</u>					-	3급	1	1					4급	4	3			1		5급	<u>30</u>	18	2	2	8		6급이하 계	<u>484</u>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p>제2조(정원의 총수) ----- ----- <u>534명</u>이며, ----- -----.</p> <p>1. ----- : <u>521명</u></p> <p>2. (현행과 같음)</p> <p>[별 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4급 이상</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th> <th>9급</th> </tr> <tr> <td>비율</td> <td>1% 이내</td> <td>6.3% 이내</td> <td>19.4% 이내</td> <td>30% 이내</td> <td>31.5% 이내</td> <td>11.8% 이상</td> </tr> </table> <p>비고(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별 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회 사무과</th> <th>직 기</th> <th>순 관</th> <th>동</th> </tr> <tr> <td>총 계</td> <td><u>534</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청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532</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4</td> <td>3</td> <td></td> <td></td> <td>1</td> <td></td> </tr> <tr> <td>5급</td> <td><u>31</u></td> <td>18</td> <td>2</td> <td>3</td> <td>8</td> <td></td> </tr> <tr> <td>6급이하 계</td> <td><u>496</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급상당 이하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3% 이내	19.4% 이내	30% 이내	31.5% 이내	11.8% 이상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 기	순 관	동	총 계	<u>534</u>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u>532</u>					-	3급	1	1					4급	4	3			1		5급	<u>31</u>	18	2	3	8		6급이하 계	<u>496</u>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 이내	20% 이내	29.7% 이내	30.3% 이내	13% 이상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 기	순 관	동																																																																																																																																																																																	
총 계	<u>521</u>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u>519</u>					-																																																																																																																																																																																	
3급	1	1																																																																																																																																																																																					
4급	4	3			1																																																																																																																																																																																		
5급	<u>30</u>	18	2	2	8																																																																																																																																																																																		
6급이하 계	<u>484</u>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3% 이내	19.4% 이내	30% 이내	31.5% 이내	11.8% 이상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 기	순 관	동																																																																																																																																																																																	
총 계	<u>534</u>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u>532</u>					-																																																																																																																																																																																	
3급	1	1																																																																																																																																																																																					
4급	4	3			1																																																																																																																																																																																		
5급	<u>31</u>	18	2	3	8																																																																																																																																																																																		
6급이하 계	<u>496</u>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67호

「2014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추진하는 「2014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4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 사업기간 : 2014. 4. 1.(화) ~ 6. 13.(금)
- 모집기간 : 2014. 1. 20.(월) ~ 1. 27.(월)
- 모집인원 : 40명 정도
- 사업유형 : 환경정화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DB 구축 지원사업 기타 사업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①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국민연금 수급권자
- ② 1세대 2명 이상, 재학생(대원생 포함) ※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 가능
-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④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3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
- ⑤ 연속하여 3단계 참여한 자
- ⑥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 ⑦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⑧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이거나 전국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⑨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⑩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취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및 홈페이지 게시),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록장애 인증(해당자 지참),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등
- 근무여건 : 65세 미만은 주 28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 근무
- 시간당 단가 : 5,210원 / 간식비 : 3,000원 / 주·연차 유급휴일 부여
- 접수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문의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241-7723), 거주지 동주민센터

2014. 1. 1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